- 팔각당전시실 디자인 설계용역 -

전시그래픽 제작설치 지침서

2011. 03.

서울어린이대공원

1. 총　　칙

1-1. 건　　명 : 팔각당전시실 디자인설계용역

1-2. 설치수량 : 총괄수량표 및 문안 참고

1-3. 과업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04월 20일 까지

1-4. 적용범위

(1) 본 지침서는 『팔각당전시실 전시그래픽제작설치』 작업에 적용된다.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내　용
전시그래픽제작설치	- 출입구 로고교체 (디자인서울갤러리 → 재미있는 디자인이야기) - 디자인서울 로고교체 (Soft Seoul → 디자인서울) -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_서울 그래픽패널 설치 - 한강르네상스 보완

(2) 도면 및 시방서에서 특히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 본 설치를 완성한다.

(3) 본 시설의 제작 설치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공정표 제출하고 제작 설치를 진행한다

(4)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본 보완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감독원에게 도급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견본품 제시가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 용어의 정의

(1) 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 이라 함은 "계약일반조건" "감독원"을 말한다.

(2) 표준시방서
이 제작 설치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 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설치시행의 적정성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도급자
이 시방서에서 "도급자" 라 함은 계약일반조건의 "계약자" 를 말한다.

1-6. 감독원의 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제작설치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작 설치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원이 도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7.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 즉 시공자는 안내 사인 제작 설치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1-8.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작설치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 지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작업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현장관리

2-1.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제작설치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철거물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2-2. 주변 구조물의 보호

(1) 시공자는 작업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표지설치

시공자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사고방지 등

현장에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5. 안내 사인물 등의 보양

(1) 기존 시설물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상복구한다.

2-6. 정리정돈 및 청소

시공 현장내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7. 공해 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내부안내사인 제작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관리

3-1. 일반사항

(1)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시공관리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등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제작설치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계약설치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체작업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작업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3. 작업시간

(1) 제작설치 시행은 보행시민 및 임차인의 민원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으로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휴일작업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4.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작업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착수 후 5일 이내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실사 후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5.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제작설치 실시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등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공사보고

작업의 진척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안전 및 환경관리

5-1. 안전조치

(1) 시공자는 작업현장 주변의 통행인 및 임차인에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작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2. 안전표지

(1) 작업현장에는 적절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작업,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 작업 기록 등

6-1. 작업기록 사진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대한 기록 사진을 동일 각도 및 위치에서 촬영하되,시공전 사진과 시공중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6-2. 준공도

제작설치가 완성된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인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정리하여 제작설치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8. 그래픽제작설치

8-1. 커팅쉬트

(1) 본 제공사에 소요되는 쉬트는 옥외형 내구 년한 2년 이상으로써 불투명 및 반투명 쉬트를 도면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2) 부착하기 전에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종이를 벗겨낸 다음 쉬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4) 5°이상의 온도에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

(5) 쉬트를 부착시킨 후 스퀴지로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부적합한 면에는 고무 스퀴즈를 사용한다.

(7)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부착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쉬트와 쉬트의 연결 부위는 3mm 정도 겹쳐서 쉬트를 붙여야 한다.

(9) 쉬트 부착시 쉬트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10) 부착된 쉬트의 끝 마감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SIGN 물에 사용되는 시트 재료의 품질은 최상급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2. 실크인쇄

(1)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디자인 색상을 첨부하여 사전에 색상 샘플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숫자나 모양을 원하는 배율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매뉴얼의 색상관리에 유념하여 제작하며, 그래픽면이 고르게 인쇄 되어야 한다.

(4) 인쇄과정에서 인쇄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부분 손상시 즉시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5) 그래픽 작업이 완료된 표지판은 감독자와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3. 패널공사

(1) 실사출력

컴퓨터 프린트는 컴퓨터를 통한 이미지의 합성 및 재현 등의 다양한 DESIGN 연출을 가능하게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원고의 상태에 준하여 최선의 QUALITY를 표현하도록 한다.

규격 : 전시설계에 명시된 크기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재료

① 인화지는 무광택 인화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화지를 접착한 패널은 견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접착제는 제품과 인화지의 수축, 팽창 특성에 적합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④ 표면보호를 요하는 부분에는 무광택 라미네이팅 코팅을 한다.

2) 색상 : 칼라 프린트에 있어서는 최대한 기본원고의 칼라에 충실토록 한다.

3) 매뉴얼의 색상관리에 유념하여 제작하며, 그래픽면이 고르게 인쇄 되어야 한다.

4) 인쇄과정에서 인쇄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부분 손상시 즉시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5) 사진 매체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진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이를 몽타쥬 하거나 필름을 그대로 확대 인화하여 패널에 접착, 벽면에 전시하므로 거짓이 없는 역사적 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고, 사진 필름 확대 시에는 입자가 미세하고 색상의 선명도, 해상력이 양호해야 한다.

6) 그래픽 작업이 완료된 패널은 감독자와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4. 포멕스 / 아크릴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120° 스팀가열된 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판의 청결한 유지를 위하여 아크릴의 양면표면이 정전기 방지처리된 아크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한 하자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아크릴의 절단면에 생기는 거친 부분은 연마 처리하여야 한다.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디자인 색상을 첨부하여 사전에 색상 샘플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유의사항

(1) 시설물에 대한 부착•설치위치 및 안내정보 작업은 도급자가 시행하며, 공단 승인 및 준공 후라도 오기 및 오착 등에 대해서는 과업종료 후에도 도급자의 책임으로 정정해야 한다.

(2) 각 작업단계마다 공단 승인 후 추진하되, 일괄제작설치 전에 각 해당사인에 대해 승인받아 진행한다.

(3) 준공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10. 기타사항

(1) 모든 시설물 설치는 설치 전에 설치위치 및 안내정보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제작설치에 모든 제반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설물 제작 설치 시 발생할 모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도급자가 지급하며 발주자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